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안내

서류		발급기준	세부 사항	
필수 사항	신분증 / 인감도장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불가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년 이내 혼인기간 및 혼인 여부 확인(상세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소득증빙서류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모집공고 30~31p 참조)
추가 사항	복무 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전체 포함으로 발급)	
	전세 피해자 확인 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	
	단기부임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재택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해외에서받은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출산 이행 각서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	본인 및 세대원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모집공고 32p 참조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1년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대리인	위임장	본인	접수 장소 비치(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인장	대리인	서명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상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 합니다